
민원업무 편람

2016. 10.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

1. 일반현황	1
① 조직도	1
② 주요 임무	1
③ 부서별 기능	2
④ 주요 유관기관	3
⑤ 소관법률	3
⑥ 방송통신 관련 민원담당 기관 안내	4
2. 민원업무 흐름도	5
3.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신청 방법	6
4. 방송통신 민원처리기간	8
5.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9
6.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0
7. 참고자료	17

1

일반현황

1] 조직도



2] 주요 임무

-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
-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 정책 수립·시행
-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

3 부서별 기능

부서	주요업무
<p>기획조정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예산(기금포함)의 종합·조정, 조직·정원 ○ 공영방송 임원의 추천·임명 ○ 대국회 업무, 법무·규제 개혁, 부내 정보화 및 재무관리 ○ 위원회 정책 홍보 및 언론 취재 활동의 지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p>방송정책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 SO, 위성방송 허가·재허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전 동의 ○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제재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
<p>이용자정책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 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조사·제재, 통신 재정·알선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p>방송기반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언어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 ○ 방송 소외계층 지원 정책 수립 ○ 방송광고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방송광고 균형 발전 ○ 방송편성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방송평가제도 운영
<p>단말기 유통조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 ○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금지행위 조사·제재
<p>운영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 ○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 ○ 행정정보 공개 및 산하단체 감사

4 주요 유관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근거법률
한국방송공사 (KBS)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대상의 방송 실시, 방송문화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수행 등	방송법 제43조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교육·지식·정보·문화·교양 분야 방송 콘텐츠 제공,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수행 등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시청자 권익증진 등	방송법 제90조의 2

5 소관법률

분야	법률명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 전파법 (일부)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소관 법률 포함

⑥ 방송통신 관련 민원담당 기관 안내

분류	분야	담당기관	연락 전화번호	인터넷 사이트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와 가입자간 중재 : 가입 및 해지, 부당요금, 위약금, 통화품질 관련 ○ 통신요금 제도개선 ○ 통신사 서비스 관련 ○ 소액결제 피해 중재 	미래창조 과학부	1335	msip.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도용 피해 ○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제도 운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080-3472-119 통신민원 조정센터	msafer.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팸 개인정보유출 및 수집 관련 피해 ○ TM 스팸관련 처리 	한국인터넷 진흥원	11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kisa.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의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 유해정보 등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해정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1377	kocsc.or.kr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내용(선정성, 폭력성 등)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1377	kocsc.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케이블, IPTV 관련 중재 : 가입 및 해지, 부당요금, 수신품질 등 ○ 디지털전환 난시청 	미래창조 과학부	1335	msip.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채널 관련 인허가 등 (프로그램 내용 관련사항 제외)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정책국		kcc.go.kr



3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① 방통위 홈페이지 → ② 국민참여 → ③ 민원 신청/확인(민원신청하기)

국민참여

민원 신청/확인

고객안내

- 민원신청
- 민원 신청/확인
- 서면 민원안내
- 방문 민원안내
- 전화 상담안내
- 민원/정책Q&A
- 110온라인화상 채팅상담

신고센터

참여마당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

HOME > 국민참여 > 민원신청 > 민원 신청/확인

민원 신청/확인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조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민원에 관한 상담/불편사항을 신청·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관련 민원접수 소관기관

- ①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으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바로가기, ☎1335(국번없이)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공영방송 관련 업무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JTBC, MBN)과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 재승인 방송편성비율, 방송광고, 협찬고지에 관한 사항 부당한 방송시청 방해 및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과 다른 요금청구 등 금지행위 관련 조사 및 사후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소핑채널 재승인 및 전문편성PP(음악채널, 오락채널, 종교채널, 스포츠채널 등) 등록 유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IPTV)의 약관승인, 가입/해지/부당요금환불/요금할인/AS 등 사업자 관련 민원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지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이용계약과 다른 요금청구, 중요사항에 대한 미고지·거짓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통신요금제 등 이용약관 개선 등 SKT, KT, LGU+, 알뜰폰 사업자 등의 가입/해지/AS/부당요금환불/요금할인/포인트/소액결제/통화품질불량 등 사업자 관련 민원

- ②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중)**의 모니터링·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바로가기, ☎1377(국번없이))**에 직접 신청하시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정보통신망(인터넷) 불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격책임 준수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함(방송법 제32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이나 관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처분유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경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 음란물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미이행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 관련 정보 등

- ③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외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 광고 등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바로가기)로 신고 가능합니다.
- ④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및 난시청 관련 민원은 KBS에 직접 신청(⇒바로가기/전화 781-1000)하시면 더욱 빨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하기 공개민원목록 나의 민원보기

○ 서면신청방법

서면 민원

1. 우편신청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e메일)을 기재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민원 처리 기간 :

- 질의민원(법령) 14일
- 질의민원(제도) 7일
- 건의민원 14일
- 기타민원(통신사업자) 14일
- 기타민원(방송사업자) 30일
- 고충민원(위법, 부당한 처분 등) 7일

2. 팩스신청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e메일)을 기재하여 아래 팩스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번호 : 02-2110-0153

민원 처리 기간 :

- 질의민원(법령) 14일
- 질의민원(제도) 7일
- 건의민원 14일
- 기타민원(통신사업자) 14일
- 기타민원(방송사업자) 30일
- 고충민원(위법, 부당한 처분 등) 7일

○ 방문신청방법

방문 민원

방문민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시 사전에 전화(02-500-9000)예약 후 방문하시면 신속하고 보다 알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방문하신 후 반드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안내

전화 상담

전화상담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이용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접수

· 대표전화 : 02-500-9000

· FAX : 02-2110-0153

○ 민원접수 서식(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신청서

접수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접수일자 : . . .	접수자명 :
-------------------	--------------	--------

민원인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회신방법	<input type="checkbox"/> e-mail (e-mail 주소:) <input type="checkbox"/> 서신	
피민원인		

신청민원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제3자(민원과 관련된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민원인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e-mail, 민원내용)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해도 민원신청은 가능하나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어려워 정확한 민원처리가 곤란하고 단순 종결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원내용

제 목 :

민원내용 :

4

방송통신 민원처리기간

-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0조(민원의 처리기간)
- 처리기간

민원의 종류	처리기간
1. 질의민원(법령)	14일
2. 질의민원(제도)	7일
3. 건의민원	14일
4. 기타민원(통신사업자)	14일
5. 기타민원(방송사업자)	30일
6.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처분 등 권리침해)	7일

- 기간연장 : 부득이한 경우 1차연장 가능, 2차연장은 민원인 동의를 받아 연장(동의일시 기재), 3차 연장은 고충민원에 한함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 설치 : 방통위 민원실
-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실의 장
- 임무(관련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신청방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방송지원정책과)	근거 법령	1. 방송법 제70조제3항 2. 방송법 시행령 제54조 3.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조 제1항(별지1)
	신청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신청서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공익채널 선정신청 (방송지원정책과)	근거 법령	1. 방송법(제70조 제8항) 2. 방송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0조 제1항)(별지11)
	신청서	공익채널선정신청서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공익채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방송지원정책과)	근거 법령	1. 방송법(제17조 제2항) 2. 방송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8조 제3항)(별지8)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방송지원정책과)	근거 법령	1. 방송법(제15조 제1항)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2항)(별지5)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3)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서 또는 주총승인서 사본(법인합병·분할시) (4)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합병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신청방법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방송지원정책과)	근거 법령	1. 방송법(제9조 제5항) 2. 방송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 제1항)(별지2)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구비 서류	<p>< 민원인 제출서류 ></p> <p>(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p> <p>(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p> <p>(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p> <p>(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p> <p>(5)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p> <p>(6)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p> <p>(7)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p> <p>< 공무원확인사항 ></p> <p>(8) 법인등기사항증명서</p> <p>(9)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p>
방송사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확인 (방송정책기획과)	근거 법령	1. 주택도시금융법(제8조) 2. 주택도시금융법 시행령(제8조)
	구비 서류	<p>< 민원인 제출서류 ></p> <p>(1)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p> <p>< 공무원확인사항 ></p> <p>(2) 법인등기부등본</p>
외국자본 출연승인 (방송정책국)	근거 법령	1. 방송법(제14조) 2. 방송법 시행령(제14조)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5조)(별지4)
	신청서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
	구비 서류	<p>< 민원인 제출서류 ></p> <p>(1) 허가증(승인장) 사본</p> <p>(2)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p> <p>(3)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p> <p>(4) 출연을 받게된 경위서</p> <p>(5)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p>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신청방법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방송정책국)	근거 법령	1. 방송법(제15조의2) 2.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7조)(별지7)
	신청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등 신청서, 변경신고서
	구비 서류	<p>< 민원인 제출서류 ></p> <p>(1) 주식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p> <p>(2)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p> <p>(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p> <p>(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2항 제2호의 경우)</p> <p>(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 2제2항 제3호의 경우)</p> <p>(6)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p> <p>(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p> <p>(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p> <p>(9) 경영계획서</p> <p>< 공무원확인사항 ></p> <p>(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p> <p>(11)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p>
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 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방송정책국)	근거 법령	1. 방송법(제15조 제2항)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3항)(별지6)
	신청서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
	구비 서류	<p>1. 대표자.편성책임자 변경시 제출서류</p> <p>< 민원인 제출서류 ></p> <p>(1) 이력서</p> <p>(2) 선임.임명 증빙서류(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p> <p>(3) 가족관계증명서</p> <p>< 공무원확인사항 ></p> <p>(4) 법인등기부등본</p> <p>(5) 주민등록정보</p> <p>2. 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시 제출서류</p> <p>< 민원인 제출서류 ></p> <p>(1) 방송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p> <p>(2) 이사회 의사록</p> <p>< 공무원확인사항 ></p> <p>(3) 법인등기부등본</p>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신청방법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변경인가 (방송정책기획과)	근거 법령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5조 제2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의 심의 의결이 있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방송정책국)	근거 법령	1.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2.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7조제3항제4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 (2) 고용계약서 (3) 출연계약서 1부 및 출연계획서 (4)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5) 부모동의서(만 18세이하) (6)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E6 비자발급시) < 공무원확인사항 > (7) 추천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 (8) 여권사본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방송정책국)	근거 법령	1.방송법(제84조제1항) 2.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33조제2항[별지61])
	신청서	휴업(폐업)신고서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별지 서식61호
	구비 서류	1.휴업의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유료방송의경우)휴업사유서 (2)(유료방송의경우)수신자에대한보상계획서 (3)(유료방송의경우)역무제공계획서 2.폐업의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허가장(승인장)또는등록증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신청방법	
방송국 변경허가 (방송정책국)	근거 법령	1. 방송법(제15조) 2. 전파법(제21조, 제34조) 3. 전파법 시행령(제31조) 4.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별지9])
	신청서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설계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무선국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3)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방송국 재허가 (방송정책국)	근거 법령	1. 방송법(제17조) 2. 방송법 시행령(제16조) 3. 전파법(제22조, 제34조) 4. 전파법 시행령(제38조) 5.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 [별지7])
	신청서	방송국재허가신청서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사업운영실적서(방송보조국 제외) 2부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방송보조국 및 소출력 방송국은 제외) (6) 시설설치계획서(방송보조국 및 소출력 방송국은 제외) (7)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신청방법	
방송국 허가 (방송정책국)	근거 법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제9조) 2. 방송법 시행령(제5조, 제13조) 3. 전파법(제21조, 제34조) 4.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54조) 5.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조 [별지1])
	신청서	방송국허가신청서
	구비 서류	<p>< 민원인 제출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포함)(1부)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시설설치 계획서(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방송보조국은 제외) (8) 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 (9) 대표자·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방송보조국은 제외) (10)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각 1부. <p>< 공무원확인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별 전화번호(별도첨부)
- 민원 관련법령 및 지침(별도첨부)